

2011. 11

공주시 금강변 친수공간 보존 및 활용방안





Contents

01. 발표취지 및 목적

02. 공주시 대내외적 여건변화

03. 기본방향

04. 주요 추진사업(안)

05. 파급효과

06. 제도보완사항





01

발표 취지 및 목적

- **4대강 살리기의 마무리, 금강살리기를 지역발전의 기폭제로 활용하기 위한 대안 마련 필요**
 - 중앙정부의 4대강살리기는 핵심사업인 보의 건설이 완공되면서, 전체 공정상 마무리 단계
 - 지역의 젖줄인 금강살리기를 지역발전을 유인할 수 있는 기폭제로 작용하기 위한 대안 마련 필요
 - **현재 공주시의 여건과 향후 세종시 출범에 대응한 금강의 활용적 대안 모색**
 - 현재 공주시는 백제의 고도(古都)로서 역사·문화도시를 지향
 - 세종시 출범(2012.7)은 지역개발의 변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에 따라 금강을 활용한 세종시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 모색
 - **장기적으로는 금강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독특한 공주시의 발전방안 모색**
 - 금강에 접한 시·군은 모두 유사한 역사, 자연자원, 경관자원 등을 보유함에 따라 차별성 미흡
 - 충청남도는 장기적으로 금강 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있는 바,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구상

- 공주시가 당면한 입장에서 금강살리기를 기폭제로 지역발전 방안 모색
- 공주시의 특화발전을 위한 법적 · 제도적 장치 개선 제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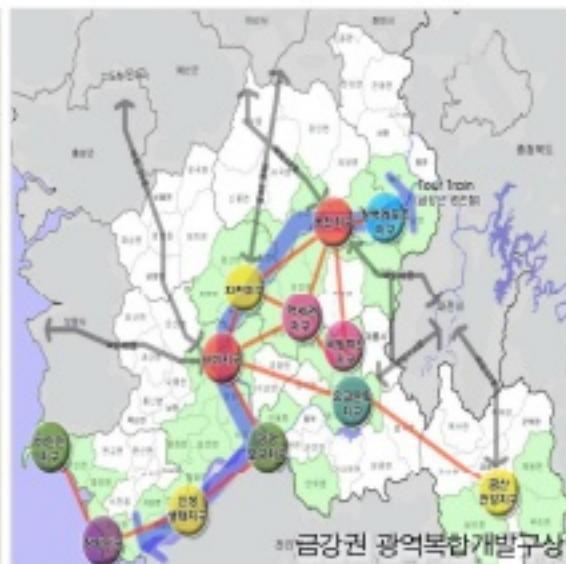


2.1 현황 및 충청남도 정책 변화

2.2 대외적 여건변화

2.1 현황 및 충청남도 여건

- 인구 125천명, 백제의 고도(古都)이며, 대도시(대전) 근교로서 성장 잠재력 풍부
 - 인구는 125천명이며, 인구증가율은 -1.0%의 지속적인 감소추세
 - 백제의 고도(古都)로서 역사문화도시를 표방
 - 인근 대전시와는 30분거리에 위치하여 대도시를 활용한 지역발전사업 추진시 성장잠재력 풍부
- 충청남도 차원에서 금강권의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역발전 정책 추진 중
 - 금강권을 충청남도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 경주
 - 세종시와 주변지역간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발굴 및 계획 수립



2.2 대외적 여건변화

- 세종시 건설과 주변지역간 상생 발전의 제도적 기반 마련

- 공주 · 연기지역에 36개 기관(9부, 2처, 2청, 1식, 2위원회, 16개 연구기관)
-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(국가의 책무)에 국가가 세종시와의 상생발전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적시



- 도청이전(내포)신도시 건설과 광역교통망 개선

- 2020년까지 인구 10만 명(9.9km^2)
- 공주-서천간 고속도로 개통, 호남고속철도 개통 예정



- 새만금 종합개발의 가시화로 관련사업 추진 예상

- 2020년까지 인구 76만명(282.9km^2)
- 교통, 산업, 관광 등에서 협력사업의 증가 예상





03 발전방향

공주시의 과거

- 백제의 왕도(王都)
- 조선시대 행정의 중심지
- 충청남도의 중심도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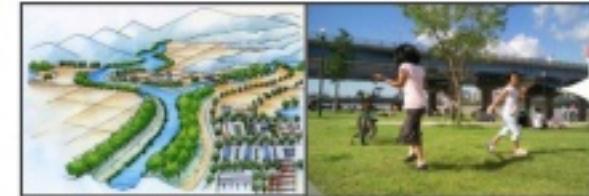
공주시의 현재

- 백제문화권의 중심도시
- 사통팔달의 광역교통 중심지
- 대도시 근교의 배후도시



공주시의 미래

- 누구나 살고 싶은 문화도시
- 누구나 찾고 싶은 관광도시
- 금강 르네상스의 선도도시



금강살리기 효과 극대화

주변지역과의 연계협력

금강 기반 육한발전 녹변도시, 공주



04 주요 추진사업

- 4.1 금강살리기 사업 내실화
- 4.2 수변 활용성 증대
- 4.3 주변지역 연계개발

4.1 금강살리기 사업 내실화

- 3개소로 분리된 금강살리기 순환루트 조성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(웅진, 쌍신, 신관)

- 분리된 3개지구(웅진, 쌍신, 신관)의 사업 극대화를 위해서 **내부 순환 루트 및 목교 설치**
- 주변 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**어린이 자전거 체험장 조성**
- 주변 주거지, 상업지, 관광지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**접근로(도보, 자전거, 차량) 확충**

- 친수구역내의 활동성을 높이기 위한 야간 조명설치 및 주변과 조화된 야간경관 창출로 금강 명소화

- 다양화되는 주민 및 관광객의 요구에 대응토록 **야간조명 설치**
- 제외지 뿐만 아니라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한 **경관농업지(녹비작물 및 수련) 조성 및 야간경관 창출**
- 백제 문화제 개최시 **제2의 수상무대로 활용**



4.2 수변 활용성 증대

- 다양한 형태의 **수상스포츠**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

- 수상스포츠 지원시설(유선장, 부잔교, 잔교, 계류시설 등) / 웅진
 - 요트, 파워보트, 수상오토바이, 놀이기구(수상스키, 웨이크보드, 바나나보트, 플라이피쉬, 땅콩보트), 관광용 유람선
- 동호회 및 일반 관광객의 활동 지원을 위한 **오토캠핑장** 조성 / 웅진, 신관

- 공주시민과 대전시·세종시를 대상으로 하는 대도시 근교형 **레포츠** 지원시설 확충

- 공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 및 휴식시설 확충 / 쌍신, 웅진, 신관
 - **야구장(1식), 가족 골프장(9홀)** / 피크닉장, 초화원
- 대도시 근교형 고급 레포츠 지원시설 확충 / 웅진
 - **노지 승마장 및 승마코스** / 패러글라이딩 / 카트장 / 국궁장



4.3 주변지역 연계개발

- **금강의 정체성 구현을 위한 금강 역사·생태·문화관 신축 / 석장리 일원**
 - 충청권의 젖줄인 금강에 대한 역사를 홍보하고, 금강살리기 사업의 문화적 성공모델 홍보
 - 위치 : 공주보 홍보시설과 연계하여 건립 / 세종시, 부여군과 연계

- **공주 문화관광지를 역사·예술·휴양이 공존하는 테마관광지로 본격 개발**
 - 공주 국립박물관, 한옥마을, 공주 예술센터와 연계한 볼거리, 즐길거리가 풍부한 테마관광지 조성
 - 고급형·중소형(가족형) 펜션단지 유치 및 장기적으로는 리조트 유치
 - 문화관광지 일대 명품 테마가로 조성(상업시설 옥외광고물 관리 및 야간경관 연출)

- **인근 대전시 및 세종시의 Active Senior를 유치하기 위한 정주시설 지원**
 - 대전시의 베이비 부머를 유치하여 재능기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
 - 세종시로 이주하는 고급인력을 유치하고, 당사자의 사회활동 지원하기 위한 Incubating 단지 조성





05 파급효과

5.1 투자계획

- 총투자 사업비 : 4,727억원(공공 547억원, 민간 4,180억원)

- 공공투자 사업 : 내부순환루트, 목교, 접근로 개선, 어린이 자전거 체험장, 야간조명, 경관농업지, 유선장, 계류시설, 오토캠핑장, 야구장, 가족골프장, 피크닉장, 초화원, 국궁장, 금강역사생태문화관
- 민간투자사업 : 승마장, 카트장, 고급형 펜션단지, 리조트, 전원주택

5.2 파급효과

- 생산유발효과 17,088억원, 부가가치 유발효과 6,698억원, 고용유발효과 12,613명

-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▪ 생산유발효과 | 전국 17,088억원, 충남 9,131억원, 기타 6,698억원 |
| ▪ 부가가치 유발효과 | 전국 6,698억원, 충남 4,054억원, 기타 2,644억원 |
| ▪ 고용유발효과 | 전국 12,613명, 충남 7,714명, 기타 4,899명 |

- 대도시 근교의 공주시의 집중적인 여가체육기반구축으로 지역경제 및 지역발전 활력 기대



06 제도 보완 건의

- 수상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및 제도 보완 필요(관련부처 협의)
 - 동 · 서 · 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 / 내륙권 초광역개발권에 공주 포함
예) 유선장 3,250m² → 1,5000m²
- 금강살리기 사업구역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의 분담을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원마련 및 지원
 - (운영) 중앙 · 지자체(도 · 시군)간 통합운영 또는 별도의 추진체 설립
 - (예산) 국비 지원비율을 70%~80%로 상향 조정
-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친수구역특별법의 탄력적 운영
 - (사업시행자) 수자원공사, 토지주택공사, 지방공사의 민간업자 확대 시행
 - (인허가 의제) 확대 및 개별 인센티브 부여방안 시행
 - (하천법 33조) 하천의 점용허가시 공작물의 신축 · 개축 · 변경 및 토지의 형질변경시 인허가 한계
 - (국계법, 훈령 605호)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하천경계 300m내외 집수구역 절대보전 지역으로 골프장 입지 불가
- 향후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연계협력사업의 지원 확대
 - 연계협력사업 분야는 대부분 광특회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
 - 금강의 타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, 분담률 상향조정, 별도의 연계협력사업 지원 필요

감사합니다